

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

구 분	내 용
주 의	• 법령, 단규, 지시위배 사항으로서 기한이 경과되어 이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
경 고	• 법령, 단규, 지시위배 사항으로서 기한이 경과되어 이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하나 다소 경각심이 필요한 사항
훈 계	• 법령, 단규, 지시위배 사항으로서 기한이 경과되어 이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상이 참작되어 징계에 부의함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시 정	• 부당처리 사항으로서 이를 정당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사항 또는 교정이 가능한 사항
개 선	• 감사결과 위배행위가 단규 또는 제도상의 결함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 되었을 때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사항
변 상	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단에 금전적 또는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,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사손을 초래한 경우 또는 행위와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있으며, 변상 책임의 소멸사유가 없는 경우의 사항
징 계	• 법령, 단규, 지시사항 및 재단의 중요방침에 위배되어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되는 경우의 사항
고 발	• 직원의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
현 지 정	• 사안이 경미한 경우나 재단에 끼친 손해의 정도가 극히 적다고 판단 된 경우 또는 업무추진 중의 사소한 오류에 대하여 현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